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http://www.motie.go.kr>

보도자료

희망의 새시련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2014년 1월 19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김완기 과장(044-203-5740), 민경언 사무관(044-203-5743)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기업에게 듣는다

- 자유무역협정(FTA) 기업 제안제 실시 -

-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기업제안제」를 실시하여 신규 FTA 대상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 이번 기업제안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인 전략적 FTA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함에 있어 기업의 생생한 현장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산업과 통상의 연계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한다.
 - * 통상절차법 제8조(국민의 의견제출): 누구든지 정부에 통상협상·조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정부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시 정책에 반영 노력
- 1. 19.(월) ~ 2. 17.(화) 까지 한 달간 정부 FTA 공식 홈페이지 (www.fta.go.kr)를 통해 기업 제안을 접수하며,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와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홈페이지에서도 배너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 국민과 단체, 기업, 업종별 협회·단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 제안내용은 신규 FTA 체결 대상과 이미 발효한 FTA 추가자유화 협상 제안, 제안 사유, 체결시 기대효과 등 앞으로 FTA 추진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등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접수한 제안을 ‘FTA 추진 로드맵(1분기 중 발표예정)’에 반영해 신규 FTA 우선순위 선정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협상을 시작하면 되면 상품 양허·원산지 협상에도 참고하기로 했다.
- 다만, 신규 FTA 대상 선정은 상대국의 입장 및 정치·경제적으로 다양한 요인들을 신중히 고려해 추진하고 있어 제안 내용이 반드시 반영 되지 않을 수도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FTA 기업제안제를 통해 기업의 해외진출 수요를 반영하여 실수요자인 기업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FTA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첨부 : FTA기업제안제 홈페이지

	<p>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기획과 김완기 과장(☎044-203-574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p>
---	---

FTA 종합지원포털

우리나라 FTA | FTA 활용-정책 | 통상정책마당 | FTA정보광장 | 참여마당 | 기관소개

참여마당
 > FTA 기업제안

1380콜센터
 FAQ
 소동방
 의견제출
 FTA 기업제안 >
 제안하기 >
 나의 제안보기

FTA 기업제안

> 참여마당 > FTA 기업제안

FTA 기업제안제

기업의 생산인원 증가 수요를 반영한 FTA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FTA 신규추진국가/경제권에 대한 국민 여론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 장부는 FTA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국민 여론분들이 제안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신규 FTA 우선 순위 선정시 참고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다만 FTA 대상 대상 선정은 상해방의 양상 및 기타 정치·경제적 요인들을 신중히 고려하여 선정하는바, 소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점 미리 양해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승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관계법령 등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보호정책,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 신청인 본인정보

단체제안여부 * 개인 기업 법·단체

신청인이름 *

기업명 주주사업

연락처 *

* 휴대폰 번호 이 전화번호를 입력해주세요
 * 다음 링크를 클릭하면 이메일 주소의 수신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글적 다른 메일 사용용 권장합니다.

이메일 *

주소 *

> FTA 신규제출 대상 제안

미국
 멕시코 MERCOSUR(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SECA(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역외도르
 기타

동아시아
 일본 홍콩 대만 홍콩 기타

CIS
 중앙아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기타

중동
 GCC(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카타르) 이스라엘 이란 요르단
 이라크 기타

아프리카
 SACU(남아프리카,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에티오피아 EAC(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보츠와나)
 기타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및 지역

제안 사유 및 근거

제출 시 기대효과

첨부파일

> 기밀요 FTA 추가제출 제안

FTA 신규제출
 제안 대상 (복수선택 가능)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한-ASEAN
 한-인도 한-EU 한-워류 한-미국 한-러 한-호주 한-캐나다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및 지역

제안 사유 및 근거

추가제출 시
 기대효과

첨부파일

지정 **취소**

QUICK LINK

FTA콜센터 1380
 FTA추진현황
 관세율/원산지규격
 FTA협정문
 국가별 FTA
 > 한-미 FTA
 > 한-EFTA
 > 한-중 FTA
 > 한-일 FTA
 > 한-ASEAN
 FTA용어사전
 FTA협정문서간
 FTA시행규칙
 통상상담실
 통상내내제안